헌정제도연구사업
Issue Paper 2018-03-01

Ⅲ. 사회적 가치 강화를 위한 법적 쟁점과 전망

유럽인권법원의 차별판단기준 및 적용사례 분석

강 명 원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헌정제도연구사업
Issue Paper 2018-03-01

유럽인권법원의 차별판단기준 및 적용사례 분석

강 명 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박사)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ISSUE PAPER 2018-03-01

유럽인권법원의 차별판단기준 및 적용사례 분석

Ⅰ. 서론 07

Ⅱ. 유럽인권법원의 구성 및 운영 08

1. 유럽인권법원의 개요 08
2. 유럽인권법원과 구별해야 할 개념 09
3. 유럽인권법원의 구성 10

Ⅲ. 유럽인권법원의 재판규범-유럽인권협약 19

1. 유럽인권협약 개요 19
2. 유럽인권협약 구성 19
3. 유럽인권협약 내용 20

Ⅳ. 유럽인권협약 내의 차별금지규정과 적용사례 30

1. 차별금지규정 30
2. 차별금지규정 적용사례 30

Ⅴ. 결론 및 시사점 41

Ⅰ. 서론

- 유럽인권법원은 1959년 설립된 국제법원으로서 유럽인권협약에 규정된 정치적 · 시민적 권리의 침해를 주장하는 국가나 개인의 제소를 위해 설립되었음.

- 유럽인권법원의 차별판단기준과 그에 따른 판결례는 유럽인권신장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최근 헌법개정에 관한 주요쟁점 가운데 하나는 차별금지사유를 보다 확대하는 논의가 중심이 되었음.

- 본 보고서에서는 유럽인권법원의 차별판단기준과 판결례를 분석한 연구를 수행하여, 국내 인권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고 향후 헌법개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Ⅱ. 유럽인권법원의 구성 및 운영

1. 유럽인권법원의 개요[1)]

- 유럽 인권법원은 1998년부터 영구적 회기를 가지며, 개인이 직접 제소할 수 있음.
- 유럽 인권법원은 설치 약 50년 만에 10,000건 이상 판결, 이 판결은 해당 국가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며, 이 판결로 인해 국내 여러 분야에서 해당 국가는 법률을 개정하거나 행정 관행을 수정함.
- 유럽 인권법원의 판례는 유럽 내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견고히 하고 새로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역동적이고 강력한 도구인 협약을 만듦.
- 현재 유럽 인권법원은 1994년 영국의 건축가 리차드 로저스(Lord Richard Rogers)에 설계되었고, 스트라스부르(Strasbourg)에 있는 인권궁전(Palais des droits de l'homme) 내에 위치.
- 유럽 인권법원은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으며, 협약을 비준한 유럽평의회 47개 회원국내 8억 유럽인의 인권존중을 보장함.

1)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site, "La cour en bref(Pdf)", Conseil de l'Europe, p. 2.

출처 : La Cour en bref(유럽인권법원 간략소개)[2)]

유럽인권법원 역사적 지표
1949년 5월 5일 : 유럽위원회 설립
1950년 11월 4일 : 유럽 인권협약의 채택
1953년 9월 3일 : 유럽 인권협약의 효력 발생
1959년 1월 21일 : 유럽위원회의 자문의회에 의한 법원의 구성원에 관한 첫 번째 선거
1959년 2월 23-38일 : 유럽 인권법원의 첫 번째 회기
1959년 9월 18일 : 유럽 인권법원 규칙 채택
1960년 11월 14일 : 유럽 인권법원의 첫 판결(Lawless c. Irlande)
1998년 11월 1일 : 새로운 법원 설립을 위한 협약 제11호 효력 발생
2008년 9월 18일 : 유럽 인권법원의 10000번째 판결
2010년 6월 1일 : 유럽 인권법원의 효율성의 장기적 보장 검토에 관한 협약 제14호 효력 발생

2. 유럽인권법원과 구별해야 할 개념[3)]

(1) 유럽연합법원 : 유럽연합법원은 룩셈부르크(Luxembourg)에 위치하며, 유럽연합 설립조약의 적용과 해석 및 공동체 법의 준수를 보장.

(2) 국제사법재판소 : 유엔의 사법기관으로 네델란드 해이그(Haye)에 위치.

(3) 세계인권선언 : 국제적 수준에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1948년, 유엔에 의해 채택된 선언.

(4) 기본권에 관한 헌장 : 2000년에 채택된 기본권과 인권에 관한 유럽연합헌장.

2) https://www.echr.coe.int/Pages/home.aspx?p=court&c=fre#newComponent_1346149514608_pointer (2018. 06. 27일 최종검색)
3)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site, op.cit (1), p. 1.

3. 유럽인권법원의 구성

(1) 법원 재판관[4)]

- 재판관은 유럽연합 각 회원국에서 제안한 3명의 리스트에서 유럽평의회의 의회 의원에 의해 선출. 재판관의 임기는 9년 단임. 재판관이 선출된 경우 재판관은 해당 국가의 자격이 아닌 개인의 자격을 가짐, 재판관은 완전히 독립적이며, 독립과 공평의 의무와 양립할 수 없는 그 어떤 활동도 할 수 없음.

1) 법원 재판관 선출방법

- 유럽평의회의 의회 의원은 유럽 인권법원의 재판관을 선출하여 그들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함.

- 유럽 인권협약에 따라 재판관은 가장 최고 수준의 도덕을 지녀야 하며, 능력이 검증된 법률가 또는 최고의 사법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된 조건들을 충족해야함.

- 이러한 기준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절차는 두 단계로 진행됨.

  첫째, 3명의 후보 자격자 명단 작성을 위한 국가선발절차.

  둘째, 다음으로 유럽평의회에 의해 선거절차가 이어지며, 유럽평의회 의원은 3명의 후보자의 자격을 평가한 후, 재판관 결정을 위한 선거시행.

  ① 국가선발절차 - 3명의 후보자 리스트 전송

  ▶3명의 후보자를 선발할 때, 국가는 국가선발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는 지에 대한 감독을 함, 예를 들어 공개적인 후보자 모집 등.

  ▶모든 후보자는 법적 자격과 필요한 경험을 가져야 하며, 법원의 판결을 작성할 수 있는 언어, 즉 영어 또는 불어에 대한 능통함과 적어도 그 외 언어에 대한 수동적 지식이 필요함.

4) http://website-pace.net/fr/web/as-cdh/main (2018. 06. 27일 최종검색)

▸법원 내의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 국가는 3명 중 1명은 다른 성별을 지명, 각 국가가 처한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이러한 지명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 이러한 조치로 현재 법원의 재판관 중 대략 1/3이 여성 재판관임.

▸후보자 자격보장을 기여하기 위해 유럽평의회의 국제전문가패널은 최종 3명의 후보자 리스트를 의회에 보내기 전에 예비후보자에 대한 비밀 조언을 제공.

② 유럽평의회선거 - 후보자 리스트 중에서 재판관 선출

▸의회에 의해 후보자 리스트를 받은 후, 법학 분야에서 다수의 경험이 있는 의원들도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후보자 리스트 수락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 즉, 3명의 후보자 각각이 재판관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격이 충분한지를 검토한 후 후보자 각 3명과 면담을 하고, 표준형식으로 제출된 후보자의 이력서를 검토. 검토한 후 만약 적합하다면 특별위원회는 어떤 후보자가 가장 적합한지를 보게 됨. 반대의 경우, 즉 적합하지 않다면 특별위원회는 해당 국가에 새로운 리스트를 요구함.

▸324명 의원으로 구성된 의회는 위원회의 권고에 근거하여, 본회의에서 비밀투표로 후보자 선거에 돌입함. 첫 번째 투표에서는 절대 다수표가 필요, 절대 다수표가 없을 경우, 제2차 선거가 실시되고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는 9년 단임의 유럽 인권법원의 재판관으로 정식 선출됨.

〈유럽 인권법원 재판관 구성〉

2018년 3월 15일 기준

성 명	국 가	직 책
Guido Raimondi	이탈리아	법원장
Angelika Nußberger	독일	부 법원장
Linos-Alexandre Sicilianos	그리스	부 법원장
Ganna Yudkivska	우크라이나	부서장
Helena Jäderblom	스웨덴	부서장
Robert Spano	아일랜드	부서장

성 명	국 가	직 책
Ledi Bianku	알바니아	재판관
Işıl Karakaş	터키	재판관
Nebojša Vučinić	몬테네그로	재판관
Kristina Pardalos	산마리노	재판관
Vincent A. De Gaetano	몰타	재판관
Julia Laffranque	에스토니아	재판관
Paulo Pinto de Albuquerque	포르투갈	재판관
Erik Møse	노르웨이	재판관
Helen Keller	스위스	재판관
André Potocki	프랑스	재판관
Paul Lemmens	벨기에	재판관
Aleš Pejchal	체코	재판관
Krzysztof Wojtyczek	폴란드	재판관
Valeriu Grițco	몰도바	재판관
Faris Vehabović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재판관
Ksenija Turković	크로아티아	재판관
Dmitry Dedov	러시아	재판관
Egidijus Kūris	리투아니아	재판관
Iulia Motoc	루마니아	재판관
Jon Fridrik Kjølbro	덴마크	재판관
Branko Lubarda	세르비야	재판관
Yonko Grozev	불가리아	재판관
Síofra O'Leary	아일랜드	재판관
Carlo Ranzoni	리히텐슈타인	재판관
Mārtiņš Mits	리트비아	재판관

성 명	국 가	직 책
Armen Harutyunyan	아르메니아	재판관
Stéphanie Mourou-Vikström	모나코	재판관
Georges Ravarani	룩셈부르크	재판관
Gabriele Kucsko-Stadlmayer	오스트리아	재판관
Pere Pastor Vilanova	안도라	재판관
Alena Poláčková	슬로바키아	재판관
Pauliine Koskelo	핀란드	재판관
Georgios Serghides	키프로스	재판관
Marko Bošnjak	슬로베이나	재판관
Tim Eicke	영국	재판관
Lətif Hüseynov	아제르바이잔	재판관
Jovan Ilievski	마케도이나	재판관
Jolien Schukking	네델란드	재판관
Péter Paczolay	헝가리	재판관
Lado Chanturia	그루지아	재판관
María Elósegui	스페인	재판관
Roderick Liddell	영국	법원서기
Françoise Elens-Passos	벨기에	법원서기보조

(2) 5개 부문(Section)[5)]

– 부문은 행정기관이며 재판부임. 이 재판부는 부문 내에 구성된 법원의 사법부서임. 유럽 인권법원은 5개 부문으로 구성되고, 각 부문에는 재판부가 존재함. 각 부문은 부 문법원장, 부문 부 법원장 그리고 다수의 재판관으로 구성됨.

5) https://www.echr.coe.int/Pages/home.aspx?p=court/judges&c=fre (2018. 06. 27일 최종검색)

2018년 3월 15일 기준

부문 1	부문 2	부문 3	부문 4	부문 5
부문 법원장				
Linos-Alexandre Sicilianos	Robert Spano	Helena Jäderblom	Ganna Yudkivska	Angelika Nußberger
부문 부 법원장				
Kristina Pardalos	Julia Laffranque	Branko Lubarda	Vincent A. De Gaetano	Erik Møse
재 판 관				
Guido Raimondi	Ledi Bianku	Helen Keller	Paulo Pinto de Albuquerque	André Potocki
Aleš Pejchal	Işıl Karakaş	Dmitry Dedov	Faris Vehabović	Yonko Grozev
Krzysztof Wojtyczek	Nebojša Vučinić	Pere Pastor Vilanova	Egidijus Kūris	Síofra O'Leary
Ksenija Turković	Paul Lemmens	Alena Poláčková	Iulia Motoc	Mārtiņš Mits
Armen Harutyunyan	Valeriu Griţco	Georgios Serghides	Carlo Ranzoni	Gabriele Kucsko-Stadlmayer
Pauliine Koskelo	Jon Fridrik Kjølbro	Jolien Schukking	Georges Ravarani	Lətif Hüseynov
Tim Eicke	Stéphanie Mourou -Vikström	María Elósegui	Marko Bošnjak	Lado Chanturia
Jovan Ilievski			Péter Paczolay	
부문 서기				
Abel Campos	Stanley Naismith	Stephen Phillips	Marialena Tsirli	Claudia Westerdiek
부문 보조서기				
Renata Degener	Hasan Bakırcı	Fatoş Aracı	Andrea Tamietti	Milan Blasko

(3) 대(大)재판부(Grande Chambre)

1) 대재판부 구성

– 대재판부는 법원장, 부법원장들, 부문법원장들, 그리고 각 국가의 재판관과 추첨으로 선출된 재판관으로 구성됨. 또한, 이미 판결을 한 재판부 소속 재판관들은 항소에 대한 판결을 할 때 대재판부 재판관이 될 수 없음. 한편, 일반재판부는 사건이 배당된 부문 재판부의 부문 법원장과 각 국가재판관으로 구성됨. 즉, 다시 말하면, 제소가 된 국가에서 선출된 재판관, 교대(rotation)제도에 따라 부문 법원장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 5명 으로 구성됨.[6)]

2) 제소할 수 있는 경우[7)]

– 대재판부에 2가지 경우에 제소할 수 있음. 첫 번째로 제소가 있는 경우, 둘째, 박탈(dessaisissement)의 경우임.

① 일반재판부에서 판결의 선고가 이루어지면, 해당 사건의 당사자들은 대재판부에 제소 할 수 있음. 이러한 제소는 예외적인 경우에 받아들여짐. 사실 새로운 검토를 위해 해당 사건이 대재판부로 회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결정은 대재판부 검토 위원회에 의해 결정됨.

② 예외적으로 일반재판부의 판결 박탈이 있는 경우에도 대재판부에 제소할 수 있음. 실제로, 대재판부에 제소된 일반재판부 판결에 대한 제소는 법원에 의해 판결된 이전의 판례와 충돌의 위험이 있거나 또는 협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로 이러한 경우 대재판부에 회부될 수 있음.

3) 일반재판부 절차와 다른 점[8)]

① 법원은 먼저 제소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함. 이것은 협약 내에 규정된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을 의미함. 만약,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 제소는 각하됨. 만약 몇 가지

6) https://www.echr.coe.int/Pages/home.aspx?p=court/judges&c=fre (2018. 06. 27일 최종검색).
7)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site, La CEDH en 50 questions (document complet)(Pdf), Conseil de l'Europe, p. 1.
8) Ibid.

제소이유가 있다면 법원은 한 가지 또는 몇 가지를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각하할 수 있음.

② 만약 제소 또는 제소이유 중 하나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되면, 이 결정은 최종적이고, 취소될 수 없음. 또는 만약, 제소 또는 제소이유 중 하나가 승인되면, 법원은 당사자들간에(해당 당사자와 관련된 국가) 있어서 원만한 해결에 이르도록 장려함. 원만한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은 제소애 대한 검토를 진행하는데, 다시 말하면 협약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4) 법원 제소절차 처리시간

- 법원에 의해 제소가 처리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필요한지에 대해 말하는 것은 불가능함. 법원은 제소에 대해 3년 이내에 사건 처리를 하려고 노력하지만, 몇 가지 사건은 검토하는데 종종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제소된 사건 중 몇 가지는 매우 빠르게 처리됨. 법원의 사건 처리절차 기간은 그 사건이 할당된 재판부, 법원에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들의 청구 및 기타 많은 요소, 예를 들어 청문회, 대재판부에 제소 등 경우에 따라 분명히 다름. 일부 제소는 긴급한 것으로 분류되고, 우선적으로 처리되며, 특히 청구자의 신체적 완전성을 위협하는 절박한 위험의 상태를 만드는 경우임.[9)]

5) 제소사건에 있어서 관련 국가재판관 참여

- 관련 국가 재판관은 항상 17명으로 구성되는 대재판부 구성 재판관이 되거나 7명으로 구성되는 일반재판부 구성 재판관으로 참여함.[10)]

6) 대재판부에 제소할 수 있는 판결

- 만약 위원회에 의해 불수리 결정이 있거나, 대재판부 판결은 최종적이며, 제소의 대상이 되지 않음. 사건의 당사자들은 일반재판부의 결정이 있은 후,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재판을 위해 대재판부에 제소할 수 있음. 이러한 제소는 대재판부 검토위원회에 의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검토되어짐.[11)]

9)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site, op. cit(7), Conseil de l'Europe, p. 2.
10) Ibid.
11) Ibid.

7) 법원의 공개청문회 개최[12)]

① 법원의 사건처리절차는 규정되어 있지만, 법원은 몇 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청문회 개최 결정을 하기도 함. 청문회는 스트라스부르그(Strasbourg)에 있는 인권궁전(Palais des droits de l'homme)에서 열림. 청문회는 경우에 따라 대재판부 또는 관련 재판부의 법원장에 의한 비공개 결정이 없는 한 공개됨.

② 언론과 대중은 공개청문회에 참석할 수 있음. 그들은 공개청문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리셉션에 그들의 신분증이나 기자증을 가져와 제시하면 됨. 청문회는 해당 지역의 현지시간 14시 30분부터 시작되며, 모든 청문회는 녹화되고 청문회 당일 법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중계방송이 되어짐.

(4) 서기(Greffe de la CEDH)

- 서기의 역할은 법원에서 사법기능 수행에 관한 행정 및 사법 지원을 제공하는 것임(유럽 인권협약 제24조).

1) 서기의 구성

- 서기는 법학자, 기술과 행정직원 그리고 번역가로 구성됨. 현재 유럽 인권법원의 상위 조직인 유럽평의회의 직원은 약 640명임. 시험에 의해 채용된 모든 서기들은 엄격한 독립성과 공정성을 준수하여야만 함. 서기들은 자신들의 행정 및 사법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음. 전원재판부에 의해 선출되며, 유럽 인권법원장 직속임. 또한 전원재판부에 의해 선출되는 보조 서기는 서기들의 직무를 보좌함. 유럽 인권법원의 각 5개 사법부는 1명의 부문 서기와 1명의 부문 서기보좌가 지원함. 서기는 적절한 사법재판부로 배당하기 위하여 제소를 유형별로 분류함. 또한, 법학자는 판례의 일관성에 관한 감독을 담당하며, 특히 법원의 구성원과 재판관 조직에게 정보와 의견을 제공함. 제소 처리 담당 부서 이외에, 각 부에 파견된 서기는 다음의 활동 분야 내에서 직무를 수행함.

12) Ibid.

정보, 출판물과 판례에 관한 정보, 연구 및 도서관, 공정한 보상, 언론과 대중과 관련된 의사소통, 언어서비스, 내부행정. 또한 중앙사무소에서는 메일, 문서 그리고 기록을 처리함.[13)]

2) 서기의 역할

- 서기의 주요역할은 판결 또는 결정채택에 근거하여 법원에 신청된 제소를 준비하고 처리함. 서기 중 법학자는 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33개 부로 나뉘며, 각 부는 행정팀의 보좌를 받음. 구체적으로, 법학자들은 재판관들의 의도에 맞게 분석문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질문에 관해 사건 당사자들과 의사소통을 함. 그러나 제소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결정도 그 자신이 내리지 않음.[14)]

13)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site, Greffe de la CEDH(Pdf), Conseil de l'Europe, pp. 1-2.
14) Ibid.

III. 유럽인권법원의 재판규범-유럽인권협약

1. 유럽인권협약 개요

- 유럽 인권협약으로 더 잘 알려진 기본적 자유와 인권 보호 협약은 1950년 11월 4일 로마에서 서명되었으며, 1953년에 그 효력을 발생하였음. 유럽 인권협약은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몇 가지 권리를 구체화하고 구속력 있게 하는 최초의 수단이 됨. 1950년에 채택된 이후, 협약은 여러 번 개정이 되었고, 최초 규정보다 더많은 권리들이 추가 규정됨.[15)]

2. 유럽인권협약 구성

- 유럽 인권협약은 현재 기본적 자유와 인권 보호 협약과 추가 의정서, 의정서 4호, 6호, 7호, 12호, 13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15호, 16호 의정서가 추가됨. 유럽 인권 협약은 2010년 발효된 의정서 제14호(STCE No194)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됨. 또한 유럽 인권협약은 1970년 9월 21일에 발효된 의정서 제3호(STE No45), 1971년 12월 20일 발효된 의정서 제5호(STE No55), 1990년 1월 1일 발효된 의정서 제8호(STE No118)의 규정에 따라 개정이 되었고, 이외에 의정서 제2호(STE No44)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제5조 3항에 합치되고, 1970년 9월 21일 의정서가 발효된 이후부터 이 협약 전체의 일부분을 이룸. 이 의정서에 의해 추가되었거나, 수정된 모든 규정들은 1998년 11월 1일에 발효된 의정서 제11호(STE No155)에 의해 대체됨. 1994년 10월 1일 발효된 의정서 제9호(STE No140)는 1998년 11월 1일에 폐지되었고, 의정서 제10호(STE No146)는 존재 목적이 없어짐.[16)]

15)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site, op. cit(1), Conseil de l'Europe, p. 2.
16) 유보조항 및 전체 선언 리스트와 협약 및 협약 의정서의 비준과 서명은 www.conventions.coe.int 에서 확인할 수 있음;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site, Convention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Pdf), Conseil de l'Europe, p. 3.

3. 유럽인권협약 내용

(1) 기본적 자유와 인권 보호 협약(1950년 11월 4일, 로마)[17)]

1) 전 문

-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 의해 선언된 세계인권선언을 존중하는 유럽평의회 회원국이며, 이 선언에 서명한 서명국(國)은 이 선언 안에 명시된 권리의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직용 및 인정을 보장하고자 함을 고려, 유럽평의회 목표가 회원국 간의 더 친밀한 연합을 달성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는 기본적 자유와 인권의 발전과 보호임을 고려, 진정한 민주주의 정치제도에 본질적으로 기반을 두고 유지하며, 세계의 정의와 평화의 근간을 이루는 근본적인 이 자유에 대한 회원국들의 깊은 애착, 한편으로는 선언된 인권에 대한 공통된 이해와 존중을 재확인, 동일한 정신을 지닌 유럽국가의 정부로서의 자격과 전통적인 제도와 이상적인 공동유산, 자유와 법의 지배를 존중하기 위하여 세계선언에 명시한 몇 가지 권리 중 일부 보장을 위한 첫번째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함.

2) 본문구성

① 제1조 : 인권의 준수의무 규정함.

② 1편 : 자유와 권리 (제2조 내지 제18조)에 관하여 규정함.

- 생존권, 고문금지, 노예제도와 강제노동금지, 자유와 안전의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죄형법정주의, 가족생활과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사상과 양심 및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혼인권리, 실질적 소송권리, 차별금지, 비상상태의 경우 예외, 외국인 정치활동의 제한, 권리남용의 금지, 권리행사제한의 제한

③ 2편 : 유럽인권법원 (제19조 내지 제51조)에 관하여 규정함.

- 법원기관, 다수의 재판관, 기능수행의 조건, 재판관 선출, 임기 기간 및 해임, 서기 및 보고자, 총회, 일반 및 대재판부·위원회, 단독재판부, 단독재판부 권한, 위원회 권한, 본안 및 수리 적격에 관한 재판부결정, 대재판부가 동의한 박탈, 대재판부의 권한,

17) 기본적 자유와 인권 보호협약의 자세한 내용은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site, op. cit(16), Conseil de l'Europe, pp. 5-31 참조.

법원의 권한, 국가 간의 업무, 개인청구, 수리적격의 조건, 제3자 개입, 말소, 사건의 모순조사, 화해규칙, 공개청문회 및 문서접근, 공정한 보상, 재판부판결, 대재판부 제소, 최종판결, 결정 및 판결의 동기, 판결집행 및 집행력, 자문 의견, 법원의 자문관할권, 자문의견의 동기, 법원운영비용, 재판관의 특권 및 면책

④ 3편 : 다양한 규정들 (제52조 내지 제59조)에 관하여 규정함.

- 사무총장의 조사, 인정된 인권의 보호, 각료위원회의 권력, 다양한 해결의 방법의 포기, 영토적용, 유보된 권리, 통고, 서명 및 비준

(2) 기본적 자유와 인권 보호 협약의 추가 의정서(1952년 3월 20일, 파리)[18)]

1) 전 문

- 유럽평의회 회원국이며, 서명국들은 이미 기본적 자유와 인권 보호 협약 제1조에 포함된 권리와 자유의 공동체적 보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함. 1950년 11월 4일 로마에서 서명한(이하 '협약'이라 칭함) 협약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함.

2) 본문구성

① 제1조 : 재산권 보호

② 제2조 : 교육의 권리

③ 제3조 : 자유 선거의 권리

④ 제4조 : 영토적용

⑤ 제5조 : 협약과의 관계

⑥ 제6조 : 서명 및 비준

18) 자세한 내용은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site, op. cit(16), Conseil de l'Europe, pp. 33-34 참조.

(3) 제1차 추가 의정서와 협약 이외의 몇 가지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기본적 자유와 인권 보호 협약을 위한 제4호 의정서(1963년 9월 16일, 스트라스부르그)[19)]

1) 전 문

- 유럽평의회 회원국이며, 서명국은 이미 기본적 자유와 인권 보호 협약 제1조에 포함된 권리와 자유의 공동체적 보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함.

- 로마에서 서명된 1950년 11월 4일(이하 '협약'이라 칭함) 협약과 1952년 3월 20일 파리에서 서명된 첫 번째 추가 의정서 제1, 2, 3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함.

2) 본문구성

① 제1조 : 채무에 대한 투옥 금지
② 제2조 : 통행의 자유
③ 제3조 : 국외추방금지
④ 제4조 : 외국인의 집단추방 금지
⑤ 제5조 : 영토적용
⑥ 제6조 : 협약과의 관계
⑦ 제7조 : 서명과 비준

(4) 사형폐지에 관한 기본적 자유와 인권보호협을 위한 제6호 의정서(1983년 4월 28일, 스트라스부르그)[20)]

1) 전 문

- 유럽평의회 회원국이며, 1950년 11월 4일 (이하 '협약'이라 칭함) 로마에서 서명된 기본적 자유와 인권 보호 협약에 관한 현재 의정서에 서명한 국가들은 유럽평의회의 여러 회원국들 내에서 사형제도의 폐지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들이 발전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이 합의함.

19) 자세한 내용은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site, op. cit(16), Conseil de l'Europe, pp. 35-38 참조.
20) 자세한 내용은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site, op. cit(16), Conseil de l'Europe, pp. 39-42 참조.

2) 본문구성

① 제1조 : 사형제도의 폐지

② 제2조 : 전쟁에서의 사형선고

③ 제3조 : 예외금지

④ 제4조 : 유보권리 금지

⑤ 제5조 : 영토적용

⑥ 제6조 : 협약과의 관계

⑦ 제7조 : 서명과 비준

⑧ 제8조 : 발효

⑨ 제9조 : 집행자의 기능

(5) 기본적 자유와 인권 보호 협약을 위한 제7호 의정서(1984년 11월 22일, 스트라스부르그)[21)]

1) 전 문

- 유럽평의회 회원국이며, 현재 의정서에 서명한 국가들은 1950년 11월 4일 로마에서 서명한 기본적 자유와 인권 보호 협약에 이해 몇 가지 권리와 자유의 공동체적 보장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추가 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함.

2) 본문구성

① 제1조 : 외국인 추방의 경우 절차상의 보장

② 제2조 : 형사 사건에 대한 2단계 재판권리

③ 제3조 : 사법 실수의 경우 보상권리

④ 제4조 : 이중처벌 또는 이중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

⑤ 제5조 : 배우자간의 평등

⑥ 제6조 : 영토적용

21) 자세한 내용은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site, op. cit(16), Conseil de l'Europe, pp. 43-48 참조.

⑦ 제7조 : 협약과의 관계

⑧ 제8조 : 서명 및 비준

⑨ 제9조 : 발효

⑩ 제10조 : 집행자의 기능

(6) 기본적 자유와 인권 보호 협약을 위한 제12호 의정서(2000년 11월 4일, 로마)[22)]

1) 전 문

- 유럽평의회 회원국이며, 현재 의정서에 서명한 국가들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며,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기본적 원칙을 고려함.

- 1950년 11월 4일 로마에서 서명된 기본적 자유 및 인권 보호 협약에 의해 차별의 일반적 금지에 대한 공동보증에 의해 모든 사람의 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추가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함.

- 차별금지의 원칙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당성을 충족시킨다면, 효과적이고 완전한 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는 회원국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함.

2) 본문구성

① 제1조 : 차별의 일반적 금지

② 제2조 : 영토적용

③ 제3조 : 협약과의 관계

④ 제4조 : 서명 및 비준

⑤ 제5조 : 발효

⑥ 제6조 : 집행자의 기능

22) 자세한 내용은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site, op. cit(16), Conseil de l'Europe, pp. 49-52 참조.

(7) 기본적 자유와 인권 보호 협약을 위한 제13호 의정서(2002년 5월 3일, 빌뉴스)[23)]

1) 전 문

- 이 의정서 서명국인 유럽평의회 회원국은 모든 사람의 생명에 대한 권리는 민주주의사회 내에서 기본적 가치이고, 사형제의 폐지는 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것이며, 모든 인간존재의 존엄성에 대한 완전한 인식을 확신함.

- 이 의정서 서명국인 유럽평의회 회원국은 1950년 11월 4일 로마에서 서명한 기본적 자유와 인권 보호 협약에 의하여 보장된 생명에 대한 권리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1983년 4월 28일 스트라스부르그에서 서명된 사형제도의 폐지에 관한 협약 의정서 제6호는 전쟁 임박의 위험 또는 전쟁 동안 저지른 행위를 대한 사형을 배제하지 않아, 모든 상황에서 사형을 폐지하기 위한 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함.

2) 본문구성

① 제1조 : 사형제의 폐지
② 제2조 : 위반 금지
③ 제3조 : 법률유보 금지
④ 제4조 : 영토적용
⑤ 제5조 : 협약과의 관계
⑥ 제6조 : 서명 및 비준
⑦ 제7조 : 발효
⑧ 제8조 : 집행자의 기능

23) 자세한 내용은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site, op. cit(16), Conseil de l'Europe, pp. 53-56 참조.

(8) 기본적 자유와 인권 보호 협약을 위한 제15호 의정서 (2013년 6월 24일, 스트라스부르그)[24)]

1) 전 문

- 유럽평의회 회원국이며 이 의정서 서명국 및 그 외 기본적 자유와 인권 보호 협약(1950년 11월 4일 로마에서 서명된 (이하 '협약'이라고 칭함))의 체결국들은 2012년 4월 19일과 20일 브라이튼에서 개최된 유럽 인권법원의 미래에 관한 고위급 회담에서 채택된 선언을 고려하고 또한, 2010년 2월 18일과 19일에 인터라켄에서 개최된 회의와 2011년 4월 26일과 27일 이즈미르에서 채택된 선언문을 고려함.

- 2013년 4월 26일 유럽평의회 회의에서 채택된 의견서 제283호(2013)에 근거하여 유럽 인권법원 (이하 '법원'이라 칭함)이 유럽의 인권 보호에 있어 우월한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음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함.

2) 본문구성

① 제1조 : – 인권협약 전문 다음에 다음과 같은 새로운 전문이 추가되고 낭독됨. 〈〈현재의 협약과 의정서 내에 규정된 자유와 권리에 대한 존중,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현재 협약에 의해 설립된 유럽 인권법원의 평가, 통제권을 보장 하기 위하여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무엇보다도 먼저 체결 당사국에 부과되는 것을 확인함.〉〉

② 제2조 : – 인권협약 제21조에 새로운 문단이 다음과 같이 삽입됨.〈〈협약 제22조에 의거하여 3명의 재판관의 나이는 유럽평의회 의회에서 기대 하는 65세 미만이어야 함.〉〉

③ 제3조 : – 제30조에 〈〈사건의 당사자 중의 일방이 이에 반대하지 않는 한〉〉 이 문구는 삭제됨.

④ 제4조 : – 제35조, 첫 번째 문단의 〈〈6개월 이내〉〉는 〈〈4개월 이내〉〉로 대체됨.

⑤ 제5조 : – 제35조, 3번째 문단의 〈〈제소권의 남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문구는 삭제됨.

24) 자세한 내용은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site, Protocole n° 15 portant amendement à la Convention de sauvegarde des Droits de l'Homme et des Libertés fondamentales(Pdf) Série des traités du Conseil de l'Europe – n° 213, Conseil de l'Europe, pp. 2-4 참조.

⑥ 제6조 : – 현재 의정서는 협약의 체결 당사국의 서명을 위해 개방되며, 협약의 체결 당사국은승인, 수락, 비준의 유보 없는 서명; 승인 또는 수락, 비준에 따른 승인 또는 수락, 비준의 유보하에 서명을 통해 동의를 표명할 수 있음. 승인 또는 수락, 비준서는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제출되어져야 함.

⑦ 제7조 : – 의정서는 협약 제6조에 따라 협약의 모든 체결 당사국은 의정서에 동의를 표명하는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의 새로운 달, 1일부터 발효됨.

⑧ 제8조 : – 현재 의정서 제2조에 의해 도입된 개정안은 유럽 인권협약 제22조에 근거 하여 단지 현재 의정서 발효 이후, 체결 당사국이 유럽평의회에 제출한 목록에 있는 후보자에게만 적용됨.

– 현재 의정서 제3조에 의해 도입된 개정안은 의정서 발효 이전에 대재판부의 이익을 박탈하는 법원 재판부의 제안은 사건 계속 중에 당사국 중 하나가 반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 현재 의정서 제4조는 현재 의정서 발효일부터 6개월 이후에 발효됨. 현재 의정서 제4조는 이 조항의 발효 이전에 성립된 유럽 인권협약 제35조 첫번째 문단의 의미 내의 최종 결정 관련 소송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 현재 의정서의 다른 모든 조항은 제7조 규정에 따라 그 발효일로부터 적용 되어짐.

⑨ 제9조 : –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은 유럽평의회 회원국과 또 다른 협약의 체결 당사국에게 이 협약을 통보함.

· 모든 서명

· 승인 또는 수락, 비준서의 제출

· 제7조에 따른 현재 의정서 발효일

· 그 밖의 행위와 현재 의정서에 의해 처리되는 통지 또는 의사소통

(9) 기본적 자유와 인권 보호 협약을 위한 제16호 의정서(2013년 10월 2일, 스트라스부르그)[25)]

1) 전 문

- 유럽평의회 회원국이며 이 의정서 서명국 및 그 외 기본적 자유와 인권 보호 협약(1950년 11월 4일 로마에서 서명된 (이하 '협약'이라고 칭함))의 체결국들은 협약규정 특히, 유럽 인권법원 설립에 관한 제19조에 근거하여, 국가 당국과 법원 사이의 상호작용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자문 의견을 제공하기 위한 법원 권한의 확대와 보충성의 원칙에 따른 협약의 이행을 강화하는 것을 고려하면서 2013년 6월 28일 유럽평의회 의회에 의해 채택된 제285호 의견서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함.

2) 본문구성

① 제1조 : - 유럽 인권협약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체결 당사국의 최고법원은 의정서 또는 협약에 의해 규정된 자유와 권리의 적용 또는 해석과 관련된 원칙 문제에 관하여 자문 의견을 법원에 요구할 수 있음.

- 요청을 한 체결 당사국의 최고법원은 그 전에 제기된 사건의 맥락 내에서 자문 의견을 구할 수 있음.

- 요청을 한 체결 당사국의 최고법원은 계류중인 사건의 법적 및 사실적 내용의 관련 요소를 정리하고 의견요구 사유를 제시함.

② 제2조 : - 대재판부 5인의 판사 패널은 제1조에 따라 자문 의견요구의 수락 여부에 대해 의사표시를 하고, 요구에 대한 모든 거절은 정당해야 함. 패널이 요청을 수락하면, 대재판부는 자문의견을 제시. 전 단락에서 언급한 대재판부 패널은 요청을 한 법원의 체결 당사국에서 선출된 판사를 포함함. 이 재판관이 부재인 경우 또는 그가 자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당사국이 사전에 제출한 자격 있는 판사 리스트에 있는 판사 중 1명을 법원장이 선택함.

25) 자세한 내용은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site, Protocole n° 15 portant amendement à la Convention de sauvegarde des Droits de l'Homme et des Libertés fondamentales(Pdf) Série des traités du Conseil de l'Europe - n° 214, Conseil de l'Europe, pp. 2-4 참조.

③ 제3조 : – 유럽평의회 위원회와 요청을 한 법원의 체결 당사국은 서면을 제출할 권리가 있고, 청문회에 참여할 권리를 가짐. 법원장은 적절한 사법 행정을 위하여 다른 체결 당사국 또는 사람에게 서면을 제출하게 하거나, 청문회에 참석하도록 초청할 수 있음.

④ 제4조 : – 자문 의견은 정당함.

– 만약 자문 의견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판사들의 만장일치로 의견이 표명되지 않는다면, 모든 판사는 별도의 의견을 첨부할 권리가 있음.

– 자문 의견은 요청한 법원과 그 법원이 속한 체결 당사국에게 전달됨.

– 자문 의견은 공개됨.

⑤ 제5조 : – 자문 의견은 구속력이 없음.

⑥ 제6조 : – 체결 당사국은 현재 의정서 제1조 내지 제5조를 협약의 추가조항처럼 고려하고, 모든 협약의 규정은 그에 따라 적용됨.

⑦ 제7조 : – 협약 체결 당사국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어 있는 이 의정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동의를 표명할 수 있음. 첫째, 승인 또는 수락, 비준에 관한 유보 없는 서명, 둘째, 수락 또는 승인, 비준에 따른 승인이나 수락, 비준에 관한 유보하에 서명.

– 승인 또는 수락, 비준서는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제출되어짐.

⑧ 제8조 : – 현재 의정서는 제7조 규정에 따라 10개 협약 체결 당사국이 의정서에 동의를 표명한 날로부터 3개월의 기간 경과 후 그 다음 첫 번째 달 1일에 효력이 발생함.

– 모든 협약 체결 당사국은 차후 현재 의정서에 동의한다는 의견 표명을 할 것이며, 제7조 규정에 의거하여 의정서에 대해 동의 표명을 한 날로부터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 그 다음 첫 번째 달 1일에 효력이 발생함.

⑨ 제9조 : – 협약 제57조에 따라 현재 의정서의 어떤 규정도 유보하지 않음.

⑩ 제10조 : – 협약 체결 각 당사국은 승인 또는 수락, 비준서의 제출 또는 서명시 유럽 평의회 사무총장에 제출된 선언에 따라 현재 의정서 첫 번째 문단 제1조의 취지에 관할권이 지정됨. 이 선언은 언제든지 같은 방법으로 수정될 수 있음.

⑪ 제11조 : –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은 유럽평의회 회원국과 체결 당사국에게 이 협약을 통지. 첫째, 모든 서명, 둘째, 승인 또는 수락, 모든 비준서의 제출, 세번째, 제8조에 따른 현재의 정서의 발효 일자, 네 번째, 제10조에 근거한 모든 선언 그리고 이 의정서와 관련된 통지 또는 의사소통 및 그 밖의 모든 행위.

Ⅳ. 유럽인권협약 내의 차별금지규정과 적용사례

1. 차별금지규정

(1) 기본적 자유와 인권 보호 협약 제14조

제14조(차별의 금지)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소수민족에의 소속,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의 향유가 확보되어야 함.

(2) 기본적 자유와 인권 보호 협약을 위한 제12호 의정서

제1조(차별의 일반적 금지)
1. 법이 규정한 어떠한 권리의 향유도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소수민족에의 소속,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함. 2. 어느 누구도 1항에서 언급된 것 등의 어떠한 이유로도 공공당국에 의해 차별 받아서는 안됨.

2. 차별금지규정 적용사례

(1) 협약 내의 '기타 모든 신분' 표현의 의미 판단

- 기본적 자유와 인권 보호 협약 제14조(차별금지)에서 사용된 '기타 모든 신분' 표현과 관련하여 다음을 명확히 함.

- Carson et autres c. RoyaumeUni 판결[26]에서 Carson의 거주지는 자신의 개인적 상황의 한 측면이며 따라서 제14조에 의해 규정한 차별의 근거를 구성한다고 간주함.

- Şerife Yiğit c. Turquie 판결[27]에 따르면, 합법적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종교 결혼을 한 신청자는 민법에 따라 결혼한 여성과 비교하여 차별을 당함. 즉, 종교 결혼 후 부부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제14조에 의해 금지된 차별은 야기할 수 있는 개인적인 상황 중 하나임.[28]

- STUMMER c. AUTRICHE 판결[29]은 1960~1990년대 사이의 장기간 교도소에서 일하는 수감자에 관한 것으로서, 일반사회보장법에서 규정한 연금제도에서 교도소에서 일하는 수감자를 제외시킴. 여기서 열거된 것 이외에 기타 모든 신분에 근거하여 차별을 금지하는 제14조는 수감자의 지위도 포함하며, 직업을 수행하는 수감자는 일반 월급노동자의 상황과 비교됨.[30]

- Kiyutin c. Russie 판결[31]에 따르면, '기타 모든 신분'이라는 용어에는 HIV상태를 포함한 건강상태도 포함되며, 유럽 인권법원에 의하면 HIV 양성 반응자는 사회에서 취약한 집단임에도, 각 국가의 관련 평가범위가 좁다고 판단함. 또한, HIV 양성 반응자에게 거주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유럽의 동의가 반영된 것은 아니며, 유럽평의회 회원국의 지지를 거의 받지 못함. 따라서 각 국가기관은 거주 허가 제한을 부과하는 매우 강력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판결.[32]

(2) 공립 중등 교육에 대한 국가적 제한의 비례성에 관한 판단

- 유럽 인권법원은 Ponomaryovi c. Bulgarie 판결[33]에서 특정 외국인이 공립 중등 교육에 접근하기 위해 학비를 지불해야 할 의무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판단함. 법원은 국적만을 근거로 한 차이는 협약과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도록 매우 강력하게 유도할 수 있다고 상기시킴. 인권존중에 필수

26) [GC], no 42184/05, 16 Mars 2010,
27) [GC], no 3976/05, 2 Novembre 2010,
28)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site, "Extrait du Rapport annuel 2010 de la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Pdf).", Conseil de l'Europe, p. 93.
29) [GC], no 3976/05, 2 Juillet 2011,
30)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site, "Extrait du Rapport annuel 2011 de la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Pdf).", Conseil de l'Europe, p. 103.
31) No 2700/10, 10 mars 2011, à paraître dans CEDH 2011.
32)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site, op. cit(30), Conseil de l'Europe, p. 103.
33) No 5335/05, 21 juin 2011, à paraître dans CEDH 2011.

적인 교육권은 협약에 의해 직접 보호되며, 이러한 교육권은 매우 특수한 공공 서비스로서 사용자 뿐만 아니라 더 넓은 사회 즉, 소수를 통합하는 민주주의 차원에서도 도움이 됨. 중등 교육은 직업 및 사회적 통합 측면에서 더 배가되는 역할을 함. 실제로 현대 사회에서는 기본적인 기술과 지식만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상황은 성공적인 개인 및 직업 발전에 대한 브레이크로 작용됨. 따라서 공립 중등 교육에 대한 국가적 제한의 비례성을 보다 엄격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함.[34)]

(3) 이민규정에 따른 사회주택 배분에 관한 판단

- 유럽 인권법원은 Bah c. Royaume-Uni 판결[35)]에서 사회주택의 배분과 관련하여 이용 가능한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국가 당국의 기준이 임의적 이거나 차별적이지 않다면 합법적임. 이민규정에 따라 사회주택 신청을 하는 외국인의 지위에 따라 구분할 수 있음. 이 판결은 다양한 청구자들의 청구에 대해 부족한 자원을 공공 당국이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공평한 분배 목표를 이루는 것인가에 대한 법안과 관련되어 있음. 실제로 영국 당국은 미성년 자녀의 공적 재정 보조 제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이민자의 사회주택 우선 배분 요구를 거절하였음.[36)]

(4) 유죄가 확정된 수감자와 재판을 기다리는 수용자 형평성에 관한 판단

- 유럽 인권법원은 Laduna c. Slovaquie 판결[37)](최종판결은 아님)에서 유죄가 확정된 수감자들과 재판을 기다리는 수용자들 사이의 가족 방문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접근에 관한 차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타당해야 함을 밝힘. 이 분야에서 유럽 인권법원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보다 무죄로 추정되는 재판 전 수용자들을 더 제한하는 체제는 불균형으로 간주함. 유럽 인권법원은 위 사건에서 협약 제8조와 관련하여 제14조 차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함.[38)]

34)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site, op. cit(30), Conseil de l'Europe, p. 103.
35) No 56328/07, 27 septembre 2011, à paraître dans CEDH 2011.
36)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site, op. cit(30), Conseil de l'Europe, p. 104.
37) No 31827/02, 13 décembre 2011, à paraître dans CEDH 2011.
38)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site, op. cit(30), Conseil de l'Europe, p. 104.

(5) 양성평등에 관한 판단

- 유럽 인권법원은 Konstantin markin c. russie 판결[39]에서 육아 휴무에서 남성 군인은 제외되고, 여성 군인은 이 권리로부터 이익을 얻는다고 판단. 이러한 상황은 협약 제8조와 관련하여 협약 제14조에 따라 일반적 관심의 중요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판단함. 유럽 인권법원은 이 판결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최초의 판결을 하였음. 즉, 유럽 인권법원 대재판부는 육아 휴직에서의 양성 평등 문제에 대한 현대적 유럽사회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사회에서의 성 역할의 전통적 분열은 군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남성들의 육아 휴무 권리를 정당화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함. 군대의 특수한 맥락에서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군대의 중요성과 관련된 특정 제한은 차별적이지 않다면 정당화 될 수 있거나, 군대 운영 효율성과 관련하여 남녀가 군대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고려하면서 제한하는 것은 가능함. 유럽의 많은 국가가 보여주듯이, 남녀 모두 육아 휴직 자격이 있음을 나타내고, 다른 한편으로 성별을 근거로 한 집단에 대한 일반적이고 자동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 – 예를 들어, 남성이 육아 휴직을 할 권리를 제외시키는 것 – 은 협약 제14조 차별금지 규정과 양립할 수 없음. 다시 말하면, 성에 근거한 차별금지는 근본적으로 중요하며, 차별강화는 불가능 하다는 것을 밝힘.[40]

(6) 다른 여성과 사는 여성의 입양 요구에 관한 판단

- 유럽 인권법원은 Gas et Dubois c. France 판결[41]에서 익명의 기증자와 의학적 도움 으로 벨기에에서 잉태되어 출산된 아이의 단순 입양을 위해 다른 여성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여성의 입양 요구를 해당 국가 법원이 거절한 것은 그 여성의 아이에 대한 생물학적 어머니의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고, 생물학적 어머니가 그 아이를 계속적으로 양육하려고 할 때 아이의 이익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함.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은 E.B. c. France 판결[42]과 근본적으로 다름. 프랑스는 동성애자 한 명에 의해 제출된 아이의 입양 허가 신청 처리와 관련하여 프랑스 법은 독신에 의해 아이가 입양되는 것은 허가함.[43]

39) [GC], no 30078/06, 22 Mars 2012,
40)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site, "Extrait du Rapport annuel 2012 de la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Pdf).", Conseil de l'Europe, pp. 100-101.
41) No 25951/07, CEDH 2012.
42) [GC], no 43546/02, 22 janvier 2008.
43)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site, op. cit(40), Conseil de l'Europe, p. 101.

(7) 국가에 의한 정당 자금지원에 관한 판단

- 유럽 인권법원은 Özgürlük ve Dayan ı şma Partisi(ÖDP) c. Turquie에 관한 판결[44]에서 법원은 최소한의 대표성을 필요로 하는 정당의 공공재정 제도와 관련된 원칙을 규정함. 법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선거 지원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대표성이 없는 정당에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거부했는데, 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협약 제14조의 위반을 발견하지 못함. 또한 차별 판단을 요청한 정당의 낮은 대표성과 선거 캠페인 때 방송시간 할당 및 몇 가지 소득에 관한 세금면제 등과 같은 공공지원 요인의 상쇄 효과에 주목함.[45]

(8) 혼외자 상속문제에 관한 판단

- 유럽 인권법원은 Fabris c. France에 관한 판결[46]에서 혼외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 으로 상속에 대해 차별을 받는 것을 우려하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함. 법원은 이러한 상황은 유럽 인권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한 차별 금지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판단함. 법원은 이미 강조했듯이 매우 강력한 이유에 한해서 혼외자 출생에 근거한 차별이 유럽 인권협약과 양립할 수 있다고 함. 법원은 사법안전원칙이 취득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으며, 합법적인 목적만이 문제의 처리 차이를 정당화 시킬 수 있다고 함. 그러나, 혼인으로 태어난 자녀와 혼외로 태어난 자녀 간에 동등한 대우의 강요는 그의 가족과 피상속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거 되어야만 함. 법원은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보았는데, 가족관계에 있어서 "자연적인 특성"에 근거한 차별 금지는 "유럽공공질서 보호의 기준"이라고 함. 1979년 이래로 법원은 끊임없이 출생에 근거한 아동의 상속권 제한은 협약과 양립할 수 없음을 확인함.[47]

44) No 7819/03, CEDH 2012.
45)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site, op. cit(40), Conseil de l'Europe, p. 101.
46) [GC], no 16574/08, CEDH 2013.
47)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site, X. Brève analyse des principaux arrêts et décisions rendus par la cour en 2013(Pdf), Conseil de l'Europe, 2014, pp. 132-133.

(9) 여성의 주민등록번호 관련 판단

- Hämäläinen c. Finlande에 관한 판결[48]은 여성의 주민등록번호 요청과 그러한 점에서 신청인 여성이 직면한 문제들과 관련이 있음. 신청인 여성은 자신의 상황을 성전환자 상황과 비교하여, 그들은 성별의 인정을 출생과 동시에 자동으로 혜택을 얻었는데 반대로, 강제적인 이혼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다고 함. 유럽 인권법원의 대재판부는 신청인의 상황과 성전환자의 상황과 서로 비교할만큼 충분히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함. 따라서 협약 제8조 및 제12조와 관련하여 협약 제14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림.[49]

(10) 자녀의 성명 중 '성'에 관한 판단

- 유럽 인권법원은 Cusan et Fazzo c. Italie에 관한 판결[50]에서 그의 자녀에게 어머니의 성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과 관련된 판단임. 신청자들은 결혼한 커플로 자신들의 딸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딸에게 어머니의 성을 주었음. 그러나 이탈리아 규정은 실제로 예외없이, 부모의 공통된 다른 소망과 관계없이, 자녀에게 자동으로 아버지의 성을 주는 것이 합법적이었음. 따라서 신청인은 법률은 자녀의 성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신청인에게 주어야 하며, 협약 제8조 위반 또는 제14조 위반을 주장함. 이 판결은 남편의 동의하에 어머니의 성을 신생아의 등기소에 등록할 수 없다는 것과 관련된 판단으로써, 법원은 '합법적인 자녀의 성'은 부모의 성별에 근거한 차별을 토대로 결정되었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르게 대우 받았다고 판단함.[51]

(11) 개인의 차별에 근거한 폭력에 관한 예방과 처벌에 관한 판단

- 유럽 인권법원은 Identoba et autres c. Géorgie에 관한 판결[52]에서 개인의 차별에 근거한 폭력에 관한 예방과 처벌을 규율하는 기본원칙에 관해 판단함. 신청인은 국가 당국이 시위 중 자신들(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의 반대자들에 의한 차별적인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48) [GC], no 37359/09, CEDH 2014.
49)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site, APERÇU DE LA JURISPRUDENCE DE LA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2014(Pdf), Conseil de l'Europe, 2015, pp. 87-88.
50) Cusan et Fazzo c. Italie, no 77/07, 7 janvier 2014.
51)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site, op. cit(49), Conseil de l'Europe, 2015, p. 88.
52) no 73235/12, 12 mai 2015.

보호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이 판결은 특히 성소수자의 성과 성 취향을 근거로 한 개인의 차별적인 공격의 경우 법원의 유럽 인권협약 제3조와 제14조의 해석에 관해 중점을 둔 판결임. 법원은 성소수자들의 시위대는 성적 취향과 성 정체성을 근거로 차별적인 공격을 당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법집행 당국이 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해당 당국의 무관심 또는 묵인으로 간주될 수 있고, 따라서 법원은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유럽 인권협약 제14조와 관련하여 취해진 제3조를 해당 당국이 위반했다고 판결함.[53]

(12) 민족 및 국적을 근거로 한 간접차별에 관한 판단

- 유럽 인권법원은 Biao c. Danemark에 관한 판결[54]에서 가족결합 제한을 목표로 한 민족 출신 및 국적을 근거로 한 간접적인 차별에 관해 판단함. 토고에서 태어난 신청자는 1993년 덴마크에 도착하여 2002년 덴마크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를 가나에서 대부분 보내며 삶. 그 후 가나에서 신청자와 결혼을 하였고, 덴마크 신청자와 합류하기 위해 신청한 체류허가를 거부당했는데, 이유는 덴마크와의 유대관계가 다른 국가보다 더 강하지 않았기 때문임. 유럽 인권법원의 대재판부는 협약 제8조와 관련하여 협약 제14조를 위반한 사실을 지적하고, 제8조에서만 별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또한 대재판부는 가족결합을 규제하는 이민정책 조치가 민족적 기원과 국적에 근거하여 간접적으로 차별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함.[55]

(13) 동성애 커플에 대한 이민문제 판단

- 유럽 인권법원은 Pajić c. Croatie에 관한 판결[56]에서 동성애 커플에 대한 이민 문제를 다루고 있음. 신청자인 Bosnie-Herzégovine는 크로아티아에 거주하는 동성 파트너와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 두 여성은 정기적으로 서로 만나기로 하고, 2년 후 신청자는 크로아티아 당국에 가족결합을 위한 체류 허가 신청을 신청함. 그녀는 그녀가 수년간 크로아티아에서 살았으며, 크로아티아의 파트너와 관계를 맺고 크로아티아에서 그녀와 함께 사업과 가족관계를 시작하고 싶다는

53)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site, APERÇU DE LA JURISPRUDENCE DE LA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2015(Pdf), Conseil de l'Europe, 2016, p. 118.
54) [GC], no 38590/10, CEDH 2016.
55)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site, APERÇU DE LA JURISPRUDENCE DE LA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2016(Pdf), Conseil de l'Europe, 2017, p. 136.
56) Pajić c. Croatie, no 68453/13, 23 février 2016.

의사 표현을함. 그러나 크로아티아 행정부와 법원은 그녀의 요청을 거부함. 신청자는 유럽 인권법원에 성적 취향을 근거로 하여 차별을 받았다고 제소함. 법원은 외국인 거주자가 임시 거주 허가 문제에 대해 부과한 조건에 관한 규정은 이성애 커플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동성커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유럽 인권협약 제14조 차별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함.[57]

(14) 인종적 증오로 인한 폭력 행위 조사범위에 관한 판단

- 유럽 인권법원은 Škorjanec c. Croatie에 관한 판결[58]에서 인종적 증오로 인한 폭력행위를 조사할 의무의 범위에 관해 판단함. 2013년에 로마출신인 신청자와 그의 파트너는 공격을 당함. 그 후 신청자와 그의 파트너를 공격한 2명의 사람은 폭행을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음. 그 폭행에는 인종적 증오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2명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사건 직전과 도중에 로마를 비방함. 신청인은 사건의 증인으로 간주되었지만, 그의 파트너는 같은 인종적 증오의 피해자가 아니라고 크로아티아 검찰에 의해 판단됨. 그 동안 그녀는 자신의 공격자에 대한 형사절차를 시작하려했으나, 검찰은 그녀가 공격 과정 중 부상을 당했다고 확인하지 못했으며, 그녀는 로마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폭행의 희생자라는 증거는 없었다고 결론을 내림. 즉, 그녀는 로마출신으로 인해 표적이 된 게 아니라, 그의 파트너로서 표적이 되었다고 하며 그녀의 주장을 기각함. 법원에서 신청인은 인종적 증오로 인하여 폭력 행위의 희생자가 되었으며, 해당 당국이 그와 관련하여 그들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함. 법원은 협약 제3조와 관련하여 제14조에 따라 그녀의 신청사건을 조사하기로 결정하였고, 해당 당국에 의하여 협약 제14조의 차별금지규정이 침해되었다고 판결함.[59]

57)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site, op. cit(55), Conseil de l'Europe, 2017, p. 140.
58) Škorjanec c. Croatie, no 25536/14, CEDH 2017.
59)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site, APERÇU DE LA JURISPRUDENCE DE LA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2017(Pdf), Conseil de l'Europe, 2018, p. 97.

(15) 양형 정책의 차별 대우에 관한 판단

- 유럽 인권법원은 Khamtokhu et Aksenchik c. Russie에 관한 판결[60]에서 성인남성 범죄자,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 범죄자 그리고 청소년 및 노인 범죄자에 대한 차별적인 양형 정책에 대해 판단함. 신청자는 살인 미수와 살인을 포함하여 종신형을 선고 받은 성인남성임. 신청자는 러시아 형법 제57조가 동일한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여성범죄자 또는 청소년 범죄자보다 불리하게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함. 그러나 유럽 인권법원의 대재판부는 협약 제5조와 관련하여 협약 제14조에 대한 어떠한 위반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함.[61]

(16) 성 및 연령에 따른 고정관념에 관한 판단

- 유럽 인권법원은 Carvalho Pinto de Sousa Morais c. Portugal에 관한 판결[62]에서 성 및 연령에 따른 고정관념에 근거한 내부 법원 결정과 관련하여 판단함. 신청자는 50살의 여성으로 이동성 문제와 성관계 어려움을 유발하는 수술을 받음. 신청자는 병원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고, 금전 및 비금전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았으나, 항소에서 최고행정법원은 손해배상액수를 줄임. 최고행정법원은 그 수술이 이미 허약한 신청자의 건강상태를 악화시켰을 뿐이라는 사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금액을 줄임. 법원에서 신청자는 최고행정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협약 제8조와 관련하여 협약 제14조에 반하는 성별과 나이를 이유로 차별받았다고 주장함. 법원은 신청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함. 이 판결의 의미는 최초로 사람의 나이와 성이라는 고정관념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데 있음.[63]

(17) 1살 미만의 어린 자녀가 있는 남성과 여성 범죄자 처리 차이에 관한 판단

- 유럽 인권법원은 Alexandru Enache c. Roumanie에 관한 판결[64]에서 1살 미만의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남성과 여성 범죄자의 처리 차이에 관해서 판단하고 있음. 신청자는 7년형을 선고받을

60) [GC], nos 60367/08 et 961/11, CEDH 2017.
61)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site, op. cit(59), Conseil de l'Europe, 2018, p. 98.
62) Carvalho Pinto de Sousa Morais c. Portugal, no 17484/15, CEDH 2017.
63)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site, op. cit(59), Conseil de l'Europe, 2018, p. 101.
64) Alexandru Enache c. Roumanie, no 16986/12, 3 octobre 2017.

당시 한 살 미만의 어린 자녀를 두고 있었음. 한편, 같은 범죄를 저지른 한 여성은 자녀의 첫 번째 생일에 선고 연기 요청을 하였고 해당 당국의 법원은 허가함. 법원에서 신청자는 성에 기반한 불법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함. 법원은 신청인의 형의 개시일 연기신청을 거절하는 것은 그의 가족생활의 조직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차별은 유럽 인권협약 제14조가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인 취급이라 판단함.[65]

(18) 이성애 커플이 동성애 커플을 위한 민법상의 연합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 유럽 인권법원은 Ratzenböck et Seydl c. Autriche에 관한 판결[66]에서 이성애 커플이 동성애 커플에게 허락된 기관에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판단하고 있음. 신청자들은 몇 년 동안 안정된 부부였으며, 이들은 동성애자가 그들의 관계를 인정 받고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는 내부법률 메커니즘인 민법상의 연합에 거절을 당함. 신청자들은 오스트리아 법원에서 결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맞지 않았다고 끊임없이 주장함. 신청자는 민법상의 연합에 관한 법률은 독점적으로 동성애 커플을 위한 것이고, 민법상의 연합은 여러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성별과 성적 취향을 근거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함. 이들은 법원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 민법상의 연합이 협약 제14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함.[67]

(19) 협약 제14조의 의미 내에서 공무원과 민간부문 직원이 비교 가능한 상황에 있는 지에 대한 판단

- 유럽 인권법원은 Fábián c. Hongrie에 관한 판결[68]에서 공무원과 민간부문 직원이 협약 제14조의 의미내에서 "비교 가능한 상황"있는지에 대해 판단함. 이 사건은 공공 부문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법률개정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공적 연금 지급이 중단되어 발단됨. 법률개정안에는 연금과 급여의 합산이 입법에 의해 금지되는 것은 민간부문의 직원, 특정 부문의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유럽 인권법원 대재판부는 민간부문에서 일하고 은퇴한 사람들과 공공 부문에서 일하고 은퇴한 사람

65)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site, op. cit(59), Conseil de l'Europe, 2018, p. 103.
66) Ratzenböck et Seydl c. Autriche, no 28475/12, 26 octobre 2017.
67)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site, op. cit(59), Conseil de l'Europe, 2018, p. 105.
68) Fábián c. Hongrie [GC], no 78117/13, CEDH 2017.

사이의 어떠한 차별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면서 협약 제14조의 의미 내에서 공무원과 민간 부문 직원이 비교 가능한 상황에 있지 않다고 판단함.[69]

69)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site, op. cit(59), Conseil de l'Europe, 2018, p. 107.

Ⅴ. 결론 및 시사점

- 유럽 인권법원은 정치적, 시민적 권리의 침해를 주장하는 국가나 개인의 제소를 위해 1959년에 설립되었고, 현재까지 약 50년 만에 10,000건 이상 판결, 이러한 판결은 유럽 인권협약에 서명한 해당 국가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며, 해당 국가는 차별적인 법률 또는 행정 관행을 수정해야만 함. 현재는 명실상부한 인권 보호에 관한 판단의 최후 보루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 유럽 인권협약으로 더 잘 알려진 기본적 자유와 인권 보호 협약은 1950년 11월 4일 로마에서 서명되고, 1953년부터 효력이 발생. 유럽 인권협약은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몇 가지 권리를 구체화하고 구속력 있게 하는 최초의 수단임. 1950년에 채택된 이후, 협약은 여러 번 개정이 되었고, 최초 규정보다 더 많은 권리들이 추가로 규정됨. 현재는 기본적 자유와 인권 보호 협약을 포함하여 기본적 자유와 인권 보호 협약을 위한 추가 의정서, 제1차 추가 의정서와 협약 이외의 몇 가지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기본적 자유와 인권 보호 협약을 위한 제4호 의정서, 사형폐지에 관한 기본적 자유와 인권보호협을 위한 제6호 의정서, 기본적 자유와 인권 보호 협약을 위한 제7호 의정서, 제12호 의정서, 제13호 의정서, 제15호 의정서, 제16호 의정서로 구성되어 있음.

- 유럽 인권협약 내의 차별금지규정은 기본적 자유와 인권 보호 협약 제14조(차별 금지)와 기본적 자유와 인권 보호 협약을 위한 제12호 의정서 제1조(차별의 일반적 금지)에 명시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소수민족에의 소속,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의 향유가 확보되어야 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공공 당국에 의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2010년 이후 유럽 인권법원은 차별금지규정과 관련하여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에 관한 판단을 하고 있으며, 특히, 기본적 자유와 인권 보호 협약 제14조 규정 내의 문구인 “기타 사회적 신분”에 관한 의미의 판단에서 기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 범위를 매우 폭넓게 인정하여 차별금지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또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애 관련, 성 및 연령에 대한

고정관념, 남성과 여성의 평등, 인종적 증오, 민족 및 국적 관련 차별, 이민문제 등에 있어서는 유럽 인권법원은 신청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하고 있음.

- 현재 유럽이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들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더이상 이러한 문제는 각 개인에게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차원으로 발전되고 있음. 따라서 유럽 인권법원이 유럽 인권협약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차별금지 관련 사례는 차후 우리나라 법원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인권 관련 사건을 심리할 때 매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임.

참고문헌

1. 유럽 인권법원 사이트 내 PDF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site, La cour en bref(Pdf), Conseil de l'Europe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site, La CEDH en 50 questions (document complet)(Pdf), Conseil de l'Europe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site, Greffe de la CEDH(Pdf), Conseil de l'Europe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site, Convention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Pdf), Conseil de l'Europe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site, Protocole n° 15 portant amendement à la Convention de sauvegarde des Droits de l'Homme et des Libertés fondamentales(Pdf) Série des traités du Conseil de l'Europe - n° 213, Conseil de l'Europe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site, Protocole n° 15 portant amendement à la Convention de sauvegarde des Droits de l'Homme et des Libertés fondamentales(Pdf) Série des traités du Conseil de l'Europe - n° 214, Conseil de l'Europe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site, "Extrait du Rapport annuel 2010 de la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Pdf)." Conseil de l'Europe, 2011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site, "Extrait du Rapport annuel 2011 de la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Pdf)." Conseil de l'Europe, 2012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site, "Extrait du Rapport annuel 2012 de la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Pdf)." Conseil de l'Europe, 2013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site, "X. Brève analyse des principaux arrêts et décisions rendus par la cour en 2013(Pdf)," Conseil de l'Europe, 2014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site, "APERÇU DE LA JURISPRUDENCE DE LA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2014(Pdf)," Conseil de l'Europe, 2015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site, "APERÇU DE LA JURISPRUDENCE DE LA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2015(Pdf)." Conseil de l'Europe, 2016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site, "APERÇU DE LA JURISPRUDENCE DE LA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2016(Pdf)." Conseil de l'Europe, 2017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site, "APERÇU DE LA JURISPRUDENCE DE LA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2017(Pdf)." Conseil de l'Europe, 2018

2. 인터넷 사이트

https://www.echr.coe.int

http://website-pace.net

헌정제도연구사업 Issue Paper 2018-03-01

유럽인권법원의 차별판단기준 및 적용사례 분석

발 행 일 2018년 6월 29일
발 행 인 이 익 현
발 행 처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T. 044)861-0300

등록번호 1981. 8. 11. 제2014-000009호
http://www.klri.re.kr

1. 본원의 승인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2. 이 책자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Ⅲ. 사회적 가치 강화를 위한 법적 쟁점과 전망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Tel. 044-861-0300 www.klri.re.kr